

< 事 例 >

# P 航空 韓國支店の 勞使紛爭

## 金 植 鉉

### I. 勞使協議會에 관하여

K國人 7명, 韓國人 從業員 26명이 勤務하고 있는 K國 P 航空株式會社 서울支店 支店長인 A-A氏는 全國 外國機關 勞動組合 서울支部長으로 부터 다음과 같은 公文를 받았다.

전국 외국기관 노조 서울지부

1968년 3월 15일

수신 : P 항공주식회사 한국지점장

제목 : 노조 분회 설치 통고 및 노사협조 양청

1. 이는 본지부 P 항 분회 설치 통고 및 노사 협조 양청입니다.
2. 본 지부는 노동조합법에 의거 1967년 12월 5자로 귀사업장 종업원으로서 전국 외국기관 노동조합 서울지부 K 국 P 항공 분회를 설치 하였으며 동년 12월 30일자로 서울 특별시장에게 신고를 필하고 별첨 사본과 같이 등록되었음을 통고하는 바입니다.
3. 귀하께서는 배전에 협조하여 주실것으로 본인은 확신하면서 본인도 귀하와 평화적 노사 교섭으로써 노사 공영이 되도록 노력과 협조를 다할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4. 앞으로는 별첨과 같은 동분회 임원 및 노사 교섭위원들과 협조하시어 귀사업장의 번영과 성업이 되도록 상호 협조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귀하의 건투를 빕니다.

유첨 : 노조 분회 설립신고증 사본 1부

노조 분회 임원명단 1부

지부장 백 영 호

---

筆者 : 서울大學校 商科大學 附設 韓國經營研究所 研究員. 서울大學校 商科大學 助敎授.  
 本 事 例는 敎育目的으로 作成된 것이므로 여기에 登場하는 어떠한 事實이 特定業體나 特定人을 가르킬 수는 없다.

전국 외국기관 노동조합 K국 P항공 분회 임원명단

분 회 장	김	천	용			
부 분 회 장	김	천	택	이	병	길
회계감사위원	최	종	국	박	홍	규

노사 교섭위원명단

전국 외국기관 노동조합	서울지부장	백	영	호
同	부지부장	이	규	섭
	분 회 장	김	천	용
	서 기	홍	계	식

이상 4명

上記 公文에서 言及된 全國 外國機關勞動組合 서울支部 K國 P航空分會에서는 當 分會 第1次 臨時總會를 1968년 3월 22일 市内 飲食店 東進飯店에서 갖고 다음과 같은 事項을 決議 이를 勞動組合法 施行令 第 13條 1項에 依據 全外機勞組 서울支部長에게 通報하였다.

1) 勤勞條件 改善에 關한 件

- ① 家族手當制度의 新設
- ② 賞與金에서 缺勤日 控除의 是正
- ③ 有給 休暇制 設置
- ④ 交通費, 晝食費 提供 要請

2) 賃金 引上에 關한 件

- ① 最低賃金を 月 \$ 100 以上으로 할것
- ② 賞與金은 年 400%로 할것
- ③ 7人 小委員會를 構成 賃金引上 調査 研究後 4월 6일 次期 總會에 報告할것.

3) 其他事項

- ① 對間諜 作戰 犧牲 遺家族돕기 義損金 募出에 同意

第1次 臨時 總會의 決議에 따라 4월 3일 第2次 臨時總會를 가지고 또한 다음과 같은 決議事項을 採擇하였다.

- 1) 最低賃金を 同種 他業體와 近接시키기 위해 우선 50% 引上시키고 그에 따라 全面 再調整을 包含 89%引上案을 決議

2) 團體協約 締結을 決議

이와 같은 決議事項을 反映시키기 위해 分會側로서는 支店側과의 勞使會議을 必要로 하게 되었다.

전국 외국기관 노조 서울지부 P항 분회

1968년 4월 5일

수신 : 서울지부장

제목 : 노사회의 개최 의뢰

1. 이는 당분회에 관한 노사 협의회 개최 양청 의뢰입니다.
2. 노동조합법 제 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주시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 래

1. 일시 : 1968년 4월 15일 18시
2. 장소 : 당 지 점
3. 인원 : 노조측 4명
4. 목적 : ① 임금인상에 관한 건  
②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건  
③ 기타사항            끝

분회장 김 천 용

이러한 分會側으로 부터의 要請을 받은 支部長은 다음과 같은 公文을 P航空 서울支店長에게 發送하였다.

전국 외국기관 노조 서울지부

1968년 4월 7일

수신 : K국 P항공주식회사 대표 귀하

제목 : 노사회의 개최 양청

1. 이는 본지부 K국 P항공 분회에 관한 노사협의회 개최 양청입니다.
2. 노동조합법 제 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노사협의회를 개최코저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前記 公文과 同一)

지부장 백 영 호

4월 11일 저녁 支店長 A-A氏는 歸家中인 分會長 金天鎔氏에게 電話를 걸고 用務를 말하지 않고 다음날 午前 9時 當支店 支店長室에서 만날것을 要請하였다. 翌日 午前 當支店에 出頭한 金天鎔氏는 (金氏는 金浦空港 事務室 勤務이며, 4월 12일은 그의 休日임) B-B次長에게 緣由를 물어 事由가 勞使會議인 이 確認되자 즉각 金浦空港 事務室에서 勤務中인 分會 總務 白吉洙氏를 呼出하고 支店內에서 勤務中인 副會長 金天澤, 李明吉氏와 함께 支店長室에 出頭하였던바, 支店長이 白氏는 그가 근무하고 있는 空港事務室을 無斷離脫했다는 이유로 白氏와의 合席을 拒否하자 그자리에서 金天鎔氏는 分會長의 職權으로 總務 白氏의 退場을 命하였다. 이에 白氏의 退場이 有은後 分會側의 이른바 第1次 非公式 勞使會議를 가졌는데 5월 10일자로 서울支部에 提出한 分會側의 會議錄(分會側만이 保管하고 있는 拔萃文)을 보면 全國外國機勞組 서울支部의 勞使會議 介入件에 對하여 兩側의 意見이 對立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支店側의 主張으로는 第三者의 介入없이 當事 兩方間의 協議下에 모든 問題를 解決토록 要望한 것이었으며, 이에 對해 分會側은 勞組가 結成된 以上 勞動法 遵守가 基本常識이 아니냐고 하면서 支店側의 意見이 絶對 不可함을 主張하였다. 아무런 合議를 보지 못한 支店長 A-A氏는 支部長 白榮浩氏에게 다음과 같은 答申을 보냈다.

P AIR LINES

수신 : 全國 外國機關 勞動組合 서울支部長

제목 : 勞使會議 開催에 대하여.

貴支部로 부터의 4월 7일부 書面으로서 要請이 있으신 前題의 件에 관하여 下記와 같이 回答드립니다.

記

1. 勞動組合法 第6條에 의하여 4월 15일 勞使會議 開催를 要請받고 있는 K國 P航空 株式會社 서울支店으로서는 우선 K國 P航空分會 役員과의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2. 上記 開催日에 대하여서는 當 서울支店 勞務責任者(注 : K國人)가 查證取得 때문에 4월 12일 K國에 出張하는바 勞組分會와 얘기를 나누게 되는것은 擔當者의 歸任을 기다려

開催코져 합니다. 擔當者는 5월 2일頃 歸任할 豫定입니다. 以上으로 말미암아 4월 15일 貴支部의 勞使會議開催는 延期하여 주시도록 諒解를 바라는 바입니다.

1968. 4. 12.

A-A

이러한 答申을 받은 서울支部長은 그러한 事情을 理解하고 있다는 點과 아울러 앞으로 發生될지도 모르는 不必要한 勞使紛爭을 事前에 防止하기 위해서 다시 4월 23일에 勞使會議를 가질것을 要請하였다 (4월 15일부). 이에 支店長 A-A氏는 前記한 公文에서 말씀드린바의 이유때문에 4월 23일 勞使會議件이 곤란하다는 點을 指摘하고 支部長의 理解를 促求하는 公文을 보냈다(4월 21일부).

한편 支店長은 分會長인 金天鎔氏에게 다음과 같은 警告書를 보냈다.

金 天 鎔 貫 下

1968. 4. 16.

K國 P航空株式會社 서울支店長

A-A

### 警 告 書

貴下는 1968년 4월 12일 午前 9시 會社가 貴下의 2명의 職員과의 會合을 가졌을 때 所屬長으로 부터 事前許可를 받지 않고 白吉洙 職員을 그 會合에 參加시킬려고 했습니다. 그럼으로 白職員은 午前 9시부터 10시반경까지 市内 事務所에 있었으며 無爲로 時間을 虛費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結果的으로 白職員은 當社의 就業規則 第28條 第7項에 該當할 우려가 있으므로 여기 本社로써 嚴重히 警告합니다.

以 上

(※ 就業規則 第28條 第7項: 職員은 退勤時間 以前에 疾病 또는 기타 事由로 早退코져 할 때에는 所屬長에게 事前承認을 얻기 위한 申請書를 提出하여야 한다.)

會社側이 이러한 警告文을 發하게 되자 分會는 즉각 第3次 臨時總會를 4월 18일 市内 飲食店 東進飯店에서 開催하고 다음과 같은 事項에 決議하였다. ① 會社 不當勞動行爲 救濟를 爲해 當分會 總務에게 發한 會社의 警告文 撤回 및 即刻 謝過를 要求한다. ② 이와 같은 要求의 貫徹이 挫折될 境遇 惹起되는 諸般 結果의 責任은 會社에게 있다. 그의 專門 7人委員會의 人選을 分會長에게 委任한다는 것과 同委員會에 總會의 權限을 委任한다는 것, 總會에 出席하지 않는者에 對한 懲戒措置를 分會長에게 一任한다는 事項등이다.

4월 22일 會社側에서 分會에 4월 24일 午後 3時 支店長室에서 勞使會議를 가질것을 要請하여 다음과 같은 內容의 會議를 가졌다.

會社側：(支店長) 여기는 社員과 上官의 만남 자리가 아니라 會社와 勞組代表가 만남 자리다. K國에서도 社長과 勞組代表가 만날때에는 이렇게 握手를 請한다. 分會側의 要求 事項은 무엇인가?

分會側：會社側이 會議召集을 要求했지 않았는가? 무엇을 分會側에 要求하는가?

分會側：큰 事項은 總會에 물어 봐야하며 正式 勞使會議가 아닌 以上 말할 수 없다.

會社側：K國에서도 勞組를 指揮한 사람은 「카이로」支店으로 간 예가 있고 그는 아직 歸國도 못하고 있다. 여기서서는 반드시 한사람의 희생자를 내고 말 것이다. <再次 會社側은 分會側의 要求事項을 問議하자 分會側은 20分間의 休會를 要求>

會社側：이것은 꼭 板門店會談式이다. 이렇다가는 「크리스마스」까지도 解決을 못볼 것이다.

分會側：解決을 못봐도 할 수 없다.

會社側：그러지 말고 「아웃·라인」만이라도 얘기해 달라 <休會에 들어감>

分會側：準備된 資料도 없으며 「퍼센티지」(註：賃金引上率을 말함)을 얘기해도 남들이 안갈것이니 公開할 수 없다.

分會側：會社側은 얼마를 줄 豫定인가?

會社側：우리도 公開할 수 없다. P航空은 半官 半民 企業體이며 K國 大藏省의 監督을 받고 있는 會社이기 때문에 勞組側의 要求를 받아 들일 수 없으며 「스트라이크」를 하더라도 받아 드릴 수 없고 全外機 勞組가 介入하더라도 하는 수 없다. P航空은 호락호락한 會社가 아니다. <이때 分會側에서 會議內容이 傳達될때 言語를 通하면 訛傳될 可能性이 있으므로 記錄을 갖도록 하자고 제의 速記式을 主張하였다. 이에 會社側은 速記式을 採擇한다면 「에스」 「노」밖에 말할 수 없다고 하면서 「포인트」式을 主張>

會社側：B-B次長이 오는 日曜日 出張을 갈텐데 그안에 서로 要求事項을 提示함이 어떡나?

分會側：會社側이 分會와 單獨으로 모일것을 願한다면 이를 正式勞使協議體에서 決定할 것이고, 만약 그렇게 하기로 決定이 나면 우리도 받아 드릴 用意가 있다. (以上の 內容은 分會가 5월 10일 支部에 提出한 會議錄에서 拔萃한 것임.)

上記한 內容에 決定을 보기 위해 早速한 時日內에 勞使會議 즉 分會側이 要求하는 外國

機關 勞組 서울支部 幹部가 合席한 勞使會議를 開催할 必要性에 따라 分會長 金天鎔氏는 支部에 다시 會議 開催를 督促하게 되었다. (4월 26일부). 아울러 總會로부터 모른 權限을 委任받은 七人專門 委員들은 勞使會議가 아직 正式으로 成立되지 못함에 第1次 會議를 5월 3일 16시 30분부터 市内 M「호텔」에서 가지고 다음과 같은 決議事項을 採擇했다. 즉 ① 正式 勞使協議會가 會社側에 依해 또 다시 失敗될 境遇, 理由 如何를 莫論하고 如何한 分會 單獨과의 非公式, 非公開 會議는 拒否한다. ② 分會側의 今年度 賃金引上案을 正式으로 通報(會社側에)한다. 但 團體協約案을 分離한다. ③ 合法的인 節次에 의해 設置된 當分會에 不明確한 理由를 들어 正式勞使會議를 繼續 拒否하면서 當分會役員들에게 壓力을 加하는 會社側에 대해 支部는 強力한 警告를 할것을 決議한다. ④ 正式 勞使會議의 3次要請도 會社가 拒否할 時는 分會長은 즉시 支部와의 連席으로 本專門委員會를 緊急召集할 것. ⑤ 分會長의 人事文과 7人專門委員의 名單을 分會長名으로 全分會員에게 通報한다. (7人專門委員: 金天鎔(分會長), 李明吉(副分會長), 白吉洙(總務), 表一男, 金永中, 李武雄, 吳在浩)

全國 外國機關 勞動組合 1968년 5월 5일

서울支部長 貴下

貴公文을 4月 30日 受領하였습니다. 貴書面에서 指摘하신 바와 같이 當社의 勞務擔當者와 勞使會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充分히 알고 있습니다. 當方 公文(4월 12일부)에서 말씀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當支店으로서는 먼저 P航空分會와 얘기를 나누고 싶으며 與件은 分會長으로부터 貴部の 諒解를 얻고 있다는 連絡를 받았읍니다. 따라서 分會와의 第1回 會議는 지난 4월 24일 實施하고 勞使協助에 대하여 意見의 交換도 있었고, 相互間 圓滿히 解決할 것으로 合意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分會와의 合議로써 解決을 보지 못했을 경우에는 分會로부터 貴部에 대하여 相議가 있을 것으로 思料됩니다. 此際에는 貴部와 會議를 가질것으로 諒解합니다.

以 上

K國 P航空株式會社 서울支店長

支店長 A-A

이러한 公文과 K國 P航空會社의 總務主任의 支部禮訪을 받은 支部長 白榮浩氏는 다음과 같이 決定, 公文을 分會에 發送하였다.

수신 : K 국 P 항공분회장

제목 : 노사회의 지시

1. 본지부는 1968년 5월 5일 17:30시에 노사회의를 갖고자 노사회의 요청을 K 국 P 항공 서울지점장에게 요청한바 1968년 5월 5일 12:00시에 회사 총무주임이 본지부에 와서 분회 간부들과 계속적인 노사교섭을 가질것을 간청한 바 있습니다.

2. 이에 대하여 본지부는 분회에서 1차 노사회의를 가질것을 지시하오니 정식 노사회의를 사용주측에 요청하여 1차 노사교섭을 가질것을 지시합니다.

3. 노사회의를 가진후 노사회의 경위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부장 백 영 호

이러한 支部의 決定과 公文을 받자 分會側은 당황하였다. 따라서 分會側과 支部사이의 이제까지 諸 經過를 다시 檢討하고 특히 支部의 介入없이 勞使會議를 가질것을 支部가 決定하기 까지의 經緯를 듣기 위해 分會側의 7人 專門委員과 外機勞組 서울支部 連席會議를 5월 7일 午後 6時 市内 H「호텔」에서 가졌다. 이 連席會議에서 支部의 洪總務가 支部側의 意見을 이야기하였는바 그 要旨는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의 事件만으로는 不當 勞動救濟申請으로 爭議決議하기에는 不足한 點도 없지 않으며 특히 會社側이 分會와의 勞使協議會를 갖기로 要請했을때에도 分會가 支部의 介入을 會社가 反對한다는 이유로 이에 應하지 않았음은 市勞動委員會 調整官의 適法判定을 받을 수 없음이 豫想됨으로 分會가 發議하여 勞使協議會를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즉 分會가 發議하여 勞使協議體를 갖되 案件은 勞使協議制度設定과 賃金引上으로 한다. 이것이 決裂될 경우 對應策은 支部로써 勞使協議會를 要請하여 支部가 介入할 根據를 갖는다. 이를 忌避할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總會를 召集하여 爭議를 決議한다.

以上の 點에서 支部와 合意를 본 分會는 다음과 같은 公文을 支店長에게 發送하였다.

全國 外機勞組 서울支部 K國 P航分會

1968. 5. 8

수신 : 배 부 처

제목 : 노사협의회 개최양청

1. 이는 당분회와 귀사와의 노사협의회 개최 양청입니다.

기

2. 일시 : 1968년 5월 10일 오후 3시



3. 장소 : 기사

4. 안전 : 가. 노사협의회 설치

나. 임금인상안

5. 노조대표 : 당해 분회 분회장 외 3명

배부처 : 지점장 1부

지부장 2부

분 회 1부

분 회 장 김 천 용

5월 10일 午後 3時부터 7時사이에 가진 勞使會議는 그 名稱에 대한 意見이 各各 달랐다. 즉 分會側에서는 이를 第3次 非公式協議會(5월 10일부 支部에 대한 通報書에서)라 하였고, K國 P航空에서 第2次 勞使會議(4월 24일에 가진 兩側 會合을 會社側에서는 支部에 보낸 1968년 5월 5일부, 公文에서 第1回 會議라 하였다)라 하고 한편 支部에서는 第1次 正式 勞使會議(支部에서 全國 外國機關 勞動組合 中央委員會에 報告한 K國 航空 分會事件 經緯書에서 5월 10일—비로소 勞使會議를 갖고 임금인상 및 노사회의 설치 요청을 함—이라고 되어 있음)라 하였다.

會社側에서 支店長 A-A氏, 次長 B-B氏, C-C氏, 總務 D-D氏와 分會側의 分會長 金天鎔氏, 副分會長 李明吉氏, 表一男氏, 總務 白吉洙氏와 그의 通譯 崔敬子(支店長秘書) 書記 金秋子(分會員)가 參席하여 가진 이 5월 10일의 勞使會議 會議錄을 보면 다음과 같다.

會社側 : 分會의 要請으로 會議를 열기로 했다.

分會側 : 3회나 勞使協議會를 當該 支部에 要請했으나 會社에서는 分會와 圓滿히 解決하기로 했다고 모두 延期하였으므로 會社의 要請대로 했다. 그리고 먼저 案件을 말한다면, 첫째 노사협의회 설치이다. 會社와 分會사이 協議가 안될때 協議體를 통해 일을 하기 위해 勞使協議會를 만들고 싶다. (註 : 分會側이 말하는 勞使協議會는 支部幹部가 任 協議會를 말함.)

會社側 : 잘 檢討하여 5월 20일까지 回答하겠다. 그러나 「會社와 分會의 合議가 잘 成立되지 않을때」의 경우라는 意見을 뺐으면 좋겠다.

分會側 : 두번째 案件으로 賃金引上案이다. 즉 同一 職種 他業體와의 같은 待遇가 주요골자이며 最低賃金の 50% 引上과 이에 따른 全職員의 全面的인 合理的인 再調整이 必要하다.

分會側：會社가 우리에게 提示하는 것은 없는가?

會社側：例年の 예를 보면 要求를 먼저하면 會社가 對答을 했다.

分會側：線은 나와 있는가?

會社側：오늘은 듣기 위한 것이다. 며칠後 回答하겠다. 5월 20일 公文으로 하겠다.

(註：記錄 번역하여 兩側이 保管하고 있는 會議錄에서 拔萃)

## II. 爭議의 發生

5월 11일 勤務日인 職員 白吉洙氏는 旅客機가 離陸한 後 空港業務가 閑散해지자 退勤 時間前이긴 하지만 早退키로 하고 空港 事務室 次長인 D-D氏에게 諒解를 求하자 D-D氏는 이를 拒絕, 緊히 早退事由가 있으면 早退届를 提出토록 하였다. 通常의 예와는 다른 D-D氏의 強硬한 態度에 白氏는 激憤, 早退届를 提出코 早退한後 翌日(白氏의 休日임) 午前 市内 事務室에 있는 支店長을 찾아가서 白氏 自身에게 行한 差別待遇를 是正하여 줄것과 職場雰圍氣를 위한 會社의 理解를 促求하는 한편 昨年 12월에 받은 懲戒處分의 不當性을 指摘하고 그 撤回을 要求하였다. 支店長은 이를 즉시 拒絕하였다. 다음날 正常勤務中인 白氏에게 支店長으로부터 呼出이 있어 白氏가 支店長室에 出頭하였던바 이미 作成되어진 停職處分書에 「싸인」 할것을 慫慂하였다. 白氏가 이를 拒絕하자 支店長과 C-C氏가 合勢 白氏에 暴行을 加하였다. (註：勞組側 主張, 서울支部가 全國 外國機關 勞組 中央委員會에 提出한 K國 P航空分會事件 經緯書 參照)事態가 이렇게 進展되자 서울支部에서는 緊急 常務執行委員會를 召集, 다음과 같은 決議文을 採擇하였다.

### 決 議 文

1968년 5월 13일 全國 外國機關 勞組 서울支部에서 열린 本支部 緊急 常務執行委員會는 本支部 傘下 K國 P航空分會 總務部長 白吉洙(豫備役 陸軍中尉)에 대하여 전체 韓國軍을 모욕하는 K國 P航空 서울支店長의 時代意識을 忘却한 輕舉妄動한 發言과 同 總務部長을 社內에 감금하고 集團暴行한 舊時代의이며 非人道的인 行爲를 痛烈히 糾彈하며 다음과 같이 決議한다.

① K國 P航空株式會社 社長은 전체 韓國軍을 모욕한 서울支店長의 發言에 대하여 韓國 國民앞에 公開 謝過하라.

② K國 P航空株式會社 社長은 報復的인 不當 勞動行爲와 人權 蹂躪行爲에 對한 公開 謝過文을 本組合에 書面提出하라.

③ K國 P航空株式會社는 同 分會 分會長에 對한 報復的인 警告狀과 同 分會 總務部長에

對한 報復的인 懲戒行爲를 즉시 撤回하고, 特殊暴行을 當한 被害者에게 應分의 報償을 하라.

④ K國 P航空株式會社는 이에 關聯된 使用者側 關係者 全員을 즉시 本國에 送還하라.

⑤ 以上이 貫撤되지 않을 경우 外機勞組 서울支部는 八千組織을 總動員하여 極限鬭爭도 不辭한다.

1968년 5월 13일      全國 外國機關 勞動組合 서울支部 緊急 常務執行委員會

그리고 分會側에서는 5日 14日 K國 P航空分會 緊急 臨時總會를 召集하고 支部에서 決議한 事項과 비슷한 決議文을 採擇 그 決議文을 會社側에 通告하였으나 이들의 反應이 신통치 않을 뿐더러 구타의 事實을 否認하자 다시 5月 16日 緊急 臨時總會를 召集하여 下記와 같은 要求條件을 내걸고 爭議에 突入할것을 滿場一致로 可決하고 爭議部長에 朴 弘圭氏를 任命하였다.

- ① 韓國軍을 모독한 發言에 對하여 K國 P航空代表는 國民앞에 公開 謝過하라.
- ② 不當勞動行爲 및 人權蹂躪行爲를 撤回하고 本組合에 書面 公開 謝過하라.
- ③ 特殊暴行을 當한 被害者에게 應分의 報償을 하고 關聯者 全員을 즉시 召還하라.
- ④ 賃金引上 50%와 賞與金 400%를 保障하라.
- ⑤ 退職金 累進制를 設定하라. (10년에 28개월 기준)
- ⑥ 勞使協議會를 各 設置하라.

上記의 要求條件을 골자로 分會는 當日 勞動爭議의 發生報告를 支部에 提出하였다. 發生報告書를 接受한 支部長 白榮浩氏는 다음과 같은 公文을 全國 外國機關 勞動組合 委員長에게 發送하였다.

전국 외국기관 노동조합 서울지부

1968년 5월 17일

수신 : 위원장귀하

제목 : 정의계기 인준요청

- 1. 이는 본지부 K국 P항공분회 정의 인준요청입니다.
- 2. 별첨과 같이 정의를 제거코저 하오니 인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첨 : 정의 발생보고서 1통

경위서                    1통

지 부 장   백   영   호

전국 외국기관 노동조합

1968년 5월 18일

수신 : 서울지부장

제목 : 노동쟁의 인준

1. 1968년 5월 17일자 공문 (제목 : 쟁의제기 인준요청)에 대한 응신임.
2. 서울시 중구 을지로 1가 192의 11호 소재 K국 P항공주식회사 서울지점 (지점장 A-A)을 상대로 하는 노동쟁의를 1968년 5월 18일자로 인준함.

위 원 장 최 용 현

이에 支部長 白榮浩氏는 勞動爭議認準書와 함께 爭議解決에 萬全을 期하라는 公文을 分會長에게 送付하였다. (1968년 5월 18일부)

5월 23일 分會長 金天鎔氏는 앞서의 勞動爭議發生報告書中の 要求條件을 다음과 같이 變更하였음을 支部에 通告하였다. 즉, ① 賃金引上 50%와 賞與金 400%을 保障하라. ② 退職金の 누진계를 設定하라. (10년에 28個月 기준) ③ 勞使協議會를 즉각 設置하라. ④ 不當勞動行爲 및 特殊暴行을 하는 行爲를 中止하고 應分の 報償을 하여야 하며 本組合에 書面 謝過하라.

이에 대해 分會는 다음과 같은 判定書를 받았다.

1968년 서울지노위 판정 제×호  
판 정

신청인(근로자) : 서울 특별시 성북구 종암동 98 전국외국기관 노동조합 서울지부 K국 P항공분회 분회장 김 천 용

피신청인(사용자) : 서울특별시 남대문구 남대문로 3가 35의 12 K국 P항공주식회사 서울지점 지점장 A-A

위 당사자자간 노동쟁의 사건 적법 여부에 관하여 당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이 신고는 적법으로 판정한다.

이 유

전국 외국기관 노조 서울지부 K국 P항공 분회장 김천용은 K국 P항공주식회사 서울지점장 A-A를 상대로 하고 ①②③④(註 : 要求條件은 前記했음으로 省略)등을 요구조건으로 하고 1968년 5월 18일자 신고한 노동쟁의는 살피건대 본건 신고는 노동조합법상의 노조

로써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간의 주장 불일치로 인하여 신고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노동쟁의 조정법 제 16조 제 2항 및 제 3항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1968년 5월 23일

서울특별시 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회

Ⅱ. 賃金 및 賞與金에 관하여

PAL과 PAL의 同種 他業體이며 國內航空會社인 QAL(Queba Air Lines) 및 PAL과 같이 外國航空會社인 TAL(Tali Air Lines)의 賃金現況은 다음과 같다.

分會側은 社內에서 最下賃金「베이스」를 받는 職員の 임금을 50% 引上하고 그에 따른 모든 職員 賃金の 適切한 再調整을 要求하였는바, 그의 다른 職員의 賃金(社內賃金格差等)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要求數値를 提供하지 않았다. 이에 서울市 地方 勞動委員會 調整委員들은 앞서의 諸社 賃金支拂現況을 比較해 보건데 PAL의 條件이 他社보다 有利한 實情임을 指摘하고 分會를 說得하였다. 즉 現在 PAL의 最低賃金은 TAL에 比較해서 약간 낮

<表-1> QAL의 賃金現況 (1968년 4월 現在)

級	本 奉	職 責 手 當	時 間 的 手 當	合 計
1 級(部長級) 3 號	15,200	7,800 6,600	10,000 3,000	33,951 26,517
2 級(課長級) 4 號	13,400	5,400 4,200	9,195 4,303	27,995 21,903
3 級(係長級) 5 號	11,200	3,000 2,100	7,408 1,939	21,608 16,553
4 級 5 號	8,200	1,200	4,904 1,149	14,304 10,549

(註: 위表는 實受領額을 中心으로 資料 蒐集한것으로 號는 中位를 擇하였고 各手當의 두가지 金額은 最高額과 最低額만을 表示하였다.)

<表-2> Basic scale in salary of PAL (1968년 4월 現在)

	(세금포함)	(세금포함)
	20,500	20,500
54,000.....판매책임자	19,500	19,500
44,500.....발권책임자	17,000	17,000
40,000.....총무계장	17,000	17,000
38,000.....예약책임자	17,000	17,000
34,000	40,500	40,500
28,500	34,000.....항공여객계장	34,000
28,000	31,000	31,000
27,500	28,000	28,000
23,500	21,500	21,500
21,500	21,500	21,500
20,500	20,500	20,500
20,500	21,500	21,500

<表-3>

A Basic Schedule of TAL

(1968년 4월 現在)

Grade	Title	Min.	Max.	Merit increase frequency
1		9,332	12,593	first two at six month intervals,
2		13,532	18,266	annually thereafter not to exceed the max.
3	equipment service man, driver	19,546	26,390	"
4	driver mechanic	23,618	31,888	"
5	cargo sales agent, trans. agent, sales agent, secretary	28,922	39,043	"
6		29,647	40,022	"
7	sr. cargo sales agent, plant maintenance mechanic	33,877	45,731	"
8	sr. trans. agent, sr. sales agent	36,649	49,465	"
9	cashier	40,721	54,973	"
10		46,438	62,684	"
11	sales representative, transportation agent supervisor, sales agent supervisor	48,852	65,966	"
13	aircraft mechanic, senior sales representative	59,670	80,555	"

For probationary and training purposes, any new employee other than stewardess, trainee, may be hired at 85% of/or the minimum base salary at the classification for a period of 6 months.

으나 他社는 最高賃金의 制限을 두는데 反해 PAL 은 年平均 약 20% 比率의 上昇率을 보이고 있는바 이는 他社보다 훨씬 좋은 條件이라는 點이다.

賞與金件에 관해서는 現在 PAL 에서 年 200%를 支給하고 있는데 이는 1966년 5월 11일 行한 서울地方勞動委員會 仲裁委員의 仲裁調整書에서 決定된 比率이다. 이點 同仲裁委員會는 다시 400%로 大幅引上토록 하는 分會側의 要求는 無理하다고 指摘 그 比率에 대하여 伸縮性을 두도록 調整하였다.

IV. 退職金 累進制에 관하여

分會側에서 資料로서 提示한 QAL의 現行表와 分會 要求案은 다음과 같다.<表-4> 現行 PAL의 退職金制度는 亦是 1966년 5월 11일 行한 仲裁書에서 다음과 같이 決定된 事이다.<表-5>

同仲裁書에서는 또한 다음과 같이 指摘하고 있었다. —退職金 累進制度를 實施하라는

<表-4>

勤續年數	QAL의 現行表	K國 P航空分會의 要求案	勤續年數	QAL의 現行表	K國 P航空分會의 要求案
1年	1(個月分)	1(個月分)	12年	32(個月分)	36(個月分)
2	2	2	13	36	40
3	4	4	14	40	44
4	6	6	15	44	48
5	8	9	16	48	52
6	11	12	17	52	66
7	14	16	18	56	60
8	17	20	19	60	64
9	20	24	20	64	68
10	24	28	21	65	69加1個月分
11	28	32	22	66	70

<表-5>

勤續年數	退職金 支拂月數	勤續年數	退職金 支拂月數
1	1	6	10
2	2	7	11
3	4	8	13
4	6	9	14
5	8	10	15

要求條件에 關하여서는 申請人이 (當時는 支部長 白榮浩氏가 申請人이었음) 某銀行의 累進率을(10年-28個月基準) 採用하여 賃것을 要求하고 있으나 被申請人은(當時도 亦是 A-A 氏였음) 同會社에는 退職金 累進制度가 없다는 點을 理由로 이를 拒否하고 있다. 그러나 韓國의 大部分 會社가 退職制度에 있어서 累進制를 實施하고 있다는 點을 감안하여..... 10年에 15個月 累進率이 合當하다고 判斷됨으로——

이러한 點을 指摘한 仲裁委員會는 分會側의 要求에 深히 難色을 表示하였다.

V. 不當勞動行爲에 關하여

白吉洙氏의 主張

① 1967년 9월 25일 TRAFFIC主任 (K國人)은 朴氏를 비롯한 韓國人 從業員 4. 5人을 動員하여 大邱 PAL支店長의 個人 이사집을 毆打것을 命하고 作業場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이러한 程度의 일은 旅客의 집이 아님으로 職員이 해야할 일이 아닐뿐더러 바로 그날이 K國과 關係되는

會社側의 主張.

① TRAFFIC主任은 그날이 K國과 關係되는 날이었음을 잠시 잊었다. 그點에 대해서 謝過하지만, 大邱支店長의 個人 이사집이 아니고 大邱事務室의 什物이었다.

날 이었다는 점을 볼때 底意가 있는 行動이다.

② 작년 12월 13일 新任 所屬長이 事務 監事の 이유로 甚한 精神的인 壓力을 加했다. 空航業務는 各己 分擔해서 할 수 있는 일의 性格이 아니고 그때그때 旅客의 便宜 圖謀가 第一의 職務인바 明確한 職務의 限界는 其實 곤란하며 當時의 감사時 이點에 對해 注意를 換氣시키고 「서어버스」를 기 다리고 있는 旅客을 爲해 먼저 退場하였다.

③ 1968년 5월 11일 早退코져 할때 K 國人 上司의 強硬한 態度는 分明히 分會結 成에 主動이 되었고 其 總務職을 맡고 있다

② 懲戒處分

白 吉 洙

서기 1938년 11월 24일생

본적지 : 충청북도 대면군 대면읍 승순 리 690

현주소 :

貴下는 1967년 12월 13일 金浦國際空港의 弊社 事務所에 있어서 所屬長 D-D氏가 實施한 旅客業務의 現地 調查時 上司에 대 하는 態度와 行爲 및 同年 9월 25일에 있 었던 이와 類似한 行爲는 就業規則 第9條에 위반되며 또한 第45條 第3項 및 第 6項에도 該當되는 것으로 認定하고 處分을 取할 것이지만 今後 本人의 自戒와 근신 意思를 表하였고 同社의 上司인 金天鎔과 其他 同僚들의 仰請이 있었음으로 情狀을 酌量하여 下記와 같이 昇給 停止處分을 하 기로 決定하였기에 通知함.

記

就業規則 第24條를 適用하여 1968년 5월에 實施豫定の 定期昇給(BASE UP 調整을 包含)을 1年間 停止함.

지점장

A-A

③ 모독적인 言辭을 恣行했다고 白氏가 主張하고 있으나 이는 言語의 障壁에서 오 는 誤解이다. 集團暴行은 한적이 없으며



는 이유로 差別待遇함이 分明하였다. 5월 12일 支店長에게 이의 是正을 要求하자 그 다음날 停職處分書에 싸인을 強要하여 本人은 이를 拒絶하자 支店長과 C-C氏가 合勢集團暴行을 하였다. 한편 全體 韓國國民과 韓國軍人을 모독하는 言辭를 恣行하였다.

오히려 白氏가 器物을 破損하고 暴行을 하였다.

等の 서로 相反된 主張이며 暴行의 件은 雙方이 告訴하고 있었다.

言語의 問題를 본다면 白氏는 通譯將校로 除隊, 相當히 능숙하게 英語를 구사하며 支店長을 除外한 K國人職員도 높은 英語實力을 具備하고 있다. 단지 支店長과의 對話는 恒時 그의 韓國人 秘書가 通譯을 擔當하고 있었다.

### Ⅶ. 爭議結果

分會側은 그동안 支部 및 仲裁委員會의 協助를 얻어 會社側과 合意 다음과 같은 決定을 보았다.

1968년 7월 8일

수신 : 서울특별시 지방노동위원회

제목 : 쟁의 발생보고 취하의 건

본 분회 서지 P항분 1968년 5월 16일자, 쟁의 발생보고는 본분회와 K국 P항공 서울지점간에 별지와 같이 합의를 보았기에 자이 취하서를 제출합니다.

전국 의기노조 서울지부 K국 P항공분회

분 회 장 김 천 용

합 의 서

1. 임금인상은 최저임금을 35%인상 및 합리적인 재조정으로 상여금은 최저 250% 지급키로 합의 되었음.
2. 노사협의회는 요구에 따라 즉시 개최키로 합의 되었음.
3. 부당노동행위 및 특수 폭행 행위를 하는 행위는 분쟁의 제기 내용의 진부에 관계없이 향후 쌍방이 협력하여 원만한 우의를 유지함으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하는 원칙에 합의하였고 회사가 백길수에게 응분의 보상을 할것과 백길수는 회사에 자진사표를 6월 초순에 제출할 것으로 합의하였으며 분회에 공개사과하라는 요구는 묵살하였음.